

의안번호	제 582 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발의자	연종석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0년 11월 17일

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연중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년 11월 17일
발 의 자 : 연중석, 송미애, 윤남진
이상정, 이상식, 서동학
심기보

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승강기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시책 수립, 기반시설 조성,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(안 제4조)
-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(안 제6조)
-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(안 제8조)

3. 조례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0. 11. 3 . ~ 2020. 11. 13. (10일간)
- 관련부서 협의 :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와 협의함
-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승강기”란 「승강기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.
2. “승강기산업”이란 승강기 부품 또는 부품소재를 제조·판매하거나 완제품을 제조·설치 및 유지보수하는 산업을 말한다.
3. “승강기산업체”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투자기업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출자하거나 보조한 기관·단체·법인을 말한다.
4. “승강기산업 클러스터”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기업, 대학, 연구소 및 지자체 등이 상호연계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승강기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승강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승강기산업의 육성·발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, 기반시설 조성, 인력양성, 기술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서 매년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
2.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승강기산업 육성사업) ①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
2.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
3. 승강기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
4.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
5. 산·학·연·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
6. 승강기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
7.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)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.

1. 국·공립연구기관
2. 정부 또는 충청북도가 출자·출연한 기관
3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설립된 대학
4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
6.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

제7조(위원회 설치) 도지사는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승강기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1. 제5조의 승강기산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2. 승강기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3. 그 밖에 승강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

제9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의 승강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

2. 승강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3.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승강기산업의 육성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승강기안전관리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승강기"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(「주차장법」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)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
□ 산업발전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산업의 집적(集積)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사업개요

- 승강기산업체 기업활동, 전문인력 양성, 기반시설 확충,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으로 승강기산업을 육성 및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5조의 지원 사업비

3. 관련조문

- 안 제5조(승강기산업 육성사업)
 1. 승강기산업체의 유치 및 육성
 2.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구축
 3. 승강기산업 인프라 확충 사업
 4. 승강기 기술개발 지원 사업
 5. 산·학·연·관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

4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1년~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나. 추계 결과 :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연 350,000천원 소요

※ 산출 기초

- 승강기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(10기업*5백만원)
- 승강기산업 선도 기술개발 (2기업*100백만원)
- 승강기산업 거점 조성 및 포럼 개최 등 (100백만원)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작성자 : 신성장산업국 산업육성과장 이용일

6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					
세 출	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승강산업육성 지원 사업	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재원 조달	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	지방세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구.군비							
기 타							